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321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1월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징계대상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접수 준비 과정에서 시한을 초과하여 징계요구 및 회부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, 현행 5일의 기간을 30일로 조정하여 접수·회부 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징계요구 시한 조정(안 제97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결과

○ 입법예고기간 :

○ 의견내용 : 의견접수 결과 수정사항 있을 시 재배부 예정

하남시의회 규칙 제 호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7조제2항 본문 중 “5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·부의 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조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<u>5일</u>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p>	<p>제97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·부의 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0일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